

IGSE 산학협력단 통번역센터 규정

2019.03.01. 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통역 및 번역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, 졸업생들의 사회 활동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IGSE 산학협력단(이하 “본단”) 부속 통번역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통역·번역에 관한 이론 및 교육에 관한 연구
2. 타기관과 연계한 국제회의 기획 및 통번역 등의 용역업무
3. 타기관과 연계한 통번역 및 국제화 관련 프로그램 등의 교육
4. 연구원 및 회원의 재교육 및 관리
5. 기타 통번역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직 제

제3조(조직) ① 통번역센터에 원장을 둘 수 있다.

②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통번역센터에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원장, IGSE 교원 및 직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② 운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본 규정 제2조의 기능에 대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통번역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3. 통번역센터의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통번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 4 장 회계

제6조(회계연도) 본원의 회계연도는 본단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7조(예산 및 결산) ①원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2월까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1항에 따라 예산 편성시 해당연도의 사업결과 보고서 및 예산집행 상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에게 보고한다.

제8조(수입원) 본원 운영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통번역 수입
2. 통번역 관련 각종 사업 및 연구 프로젝트
3.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보조금
4. 기타 수입

제9조(회계집행)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단 정관에 따른다.

제 5 장 보칙

제10조(세부사항)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IGSE 산학협력단 통번역센터 요금표

1. 통역료 (VAT포함)

	구분(경력)	2시간 까지	4시간 까지	7시간 까지	7시간 초과시
동시통역(1인당) 및 순차통역	재학생	130,000원	200,000원	300,000원	1시간 당 50,000원 추가
	통역 경력 2년 미만	250,000원	400,000원	700,000원	1시간 당 100,000만원 추가
	통역 경력 3년 이상	450,000원	600,000원	900,000원	1시간 당 120,000만원 추가

※ 교강사 통역사는 가산금 10%가 있음.

2. 번역료

1)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경우 ※ VAT 별도

언어	단가기준	단가	비고
한국어->영어	한국어 원문 1자(공백포함)	최저 50원-최고 200원 (A4 1페이지 180단어 기준 대략 40,000 -120,000원)	난이도, 양, 납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

※ 원어민 감수가 필요한 경우 감수료는 번역금액의 20%로 별도임.

2)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

언어	단가기준	단가	비고
영어->한국어	영어 1단어	최저 80원-최고 300원 (A4 1페이지 200단어 기준 대략 15,000-60,000원)	난이도, 양, 납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

3) 영상 / 오디오 (스크립트 미제공 시)

언어	단가	기준
한국어->영어,	최저 60,000원	1분당

영어->한국어	최저 50,000원	
---------	------------	--

3. 기타 통번역 의뢰인 공지사항

- 1) 통역중간에 휴식시간이 발생할 경우 그 시간에 통역사가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, 통역시간에 포함하여 통역료를 계산합니다.
- 2) 성공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해당언어에 능통한 통역사라도 회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주최측이 사전에 회의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.
- 3) 동시통역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므로 반드시 2명(이상)이 동시에 투입되어 20-30분 간격으로 교대로 통역을 수행하며, 각 통역사에 대해 통역료가 지불됩니다.
- 4) 통역 의뢰 취소 시 통역사는 의뢰한 통역을 위해 준비와 학습에 시간을 보내고 또한 의뢰 받은 일정에는 다른 통역을 맡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소보상비가 청구되며, 5-7일 전 통역료의 10%, 3-4일 전 20%, 2 일 전 30%, 하루 전 40%, 당일 취소 시 60%를 보상비로 지불하여야 합니다.
- 5) 출장 통역 시 통역비 이외에 교통비와 숙박비를 별도 제공해야 합니다.
- 6) 통역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, 녹음시에는 통역료의 30%, 방송시에는 50%가 추가됩니다.

4. 통역 및 번역사 수수료

- 통역사 및 번역사: 12%
- 재학생: 7%